

#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의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북

# FTA 활용지원, 더 편리하고 더 든든하게!



# CONTENTS



## CHAPTER 01 | FTA 개요

<b>01 자유무역협정이란?</b> .....	<b>08</b>
1. FTA의 개념	08
2. FTA를 체결하는 이유	09
3. FTA의 내용	09
<b>02 FTA 추진 현황</b> .....	<b>11</b>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1
2. 한-EU FTA와 한-미 FTA 양허 비교	13
3.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16



## CHAPTER 02 | FTA 활용 절차

<b>01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b> .....	<b>20</b>
<b>02 수입업체의 FTA 특혜 적용</b> .....	<b>21</b>



## CHAPTER 03 | FTA 활용지원 사업별 시책

<b>01 현장 밀착 지원</b> .....	<b>24</b>
1. FTA 1380	24
2. FTA 원스톱 지원센터	25
3. 찾아가는 FTA 컨설팅	26
4. 업종별 FTA 활용 콘텐츠 개발	27
<b>02 인식 제고</b> .....	<b>30</b>
5. CEO 인식 제고	30
6.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31
7. FTA 활용 전략 수립 지원	32
<b>03 협력기업 지원</b> .....	<b>33</b>
8. 동반성장 FTA 활용 부문 포상	33
9. 원산지 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선정 지원	34
10.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35
11.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36
<b>04 품목분류 애로해소</b> .....	<b>37</b>
12.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제도	37
13. 품목분류 조기심사 요청제도	38
14. 상대국의 사전심사 활용 가이드 마련	39
<b>05 인력 양성</b> .....	<b>40</b>
15. FTA 활용 재직자 실무교육	40
16. FTA 전문인력 양성	41

# CONTENTS

## CHAPTER 03 | FTA 활용지원 사업별 시책

17. 특성화고 FTA 활용 교육	42
18. FTA 원산지 관리 인력 채용 지원	43
19. FTA 전문인력 고용연계	44
20. FTA e-러닝	45
<b>06 원산지관리시스템 확충</b>	<b>46</b>
21.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46
22.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47
<b>07 FTA 활용 수출지원</b>	<b>48</b>
23. FTA 활용기업 종합수출지원 사업 연계	48
24. FTA 활용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연계	52
25. FTA 활용기업 수출금융지원 사업 연계	55
26. FTA 선도기업 육성	56
27. 해외 통관애로 해소	57
<b>08 사후검증 지원</b>	<b>58</b>
28.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58
29. 인증수출자 갱신 간소화	59
<b>09 알아두면 좋은 제도</b>	<b>60</b>
30. 무역조정지원제도	60
31. FTA 알림 매체	61

## CHAPTER 04 | FTA 활용지원 기관별 시책



<b>01 산업통상자원부</b>	<b>66</b>
<b>02 관세청</b>	<b>67</b>
<b>03 중소기업청</b>	<b>68</b>
<b>04 중소기업진흥공단</b>	<b>68</b>
<b>0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b>	<b>69</b>
<b>06 한국산업단지공단</b>	<b>69</b>
<b>07 국제원산지정보원</b>	<b>70</b>
<b>08 한국전시산업진흥회</b>	<b>70</b>
<b>09 중소기업중앙회</b>	<b>70</b>
<b>10 한국무역협회</b>	<b>70</b>
<b>11 FTA무역종합지원센터</b>	<b>71</b>
<b>12 지역 FTA활용지원센터</b>	<b>72</b>

# FTA 개요

## 01 자유무역협정이란? .....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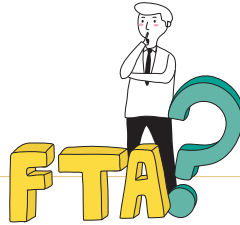
- 1. FTA의 개념 ..... 08
- 2. FTA를 체결하는 이유 ..... 09
- 3. FTA의 내용 ..... 09

## 02 FTA 추진 현황 ..... 11

-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 11
- 2. 한-EU FTA와 한-미 FTA ..... 13  
양허 비교
- 3.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 16



# 자유무역협정이란?



##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갑니다.

2013년 10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78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 FTA를 체결하는 이유

### 경제영도 확장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경제영도 확장에 따른 외국의 자원과 노동력 활용, 수출 확대를 통한 자본 축적, 선진 기술의 도입 등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 ① 수출증가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면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곧 수출 증대로 이어짐

#### ② 외국인 투자 증가

국내 시장 확대,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투자자 보호 수준 강화 등으로 국내 투자 여건이 성숙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증대

#### ③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

FTA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지며 이는 곧 경제성장과 직결되어 개인의 후생 증대로 이어짐

#### ④ 소비자 후생 증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

## 3. FTA의 내용

### FTA협정문 주요 내용

#### 1. 협정문 구조

FTA 협정문 체계는 대체로 비슷하며 전문(Preamble), 협정 본문(장, 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서한(Letter) 등으로 구성

표1. 협정 구성 요소별 주요 내용 (예시: 한·미 FTA)

구성요소	주요 내용
전문	협정 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
본문(장)	분야별로 Chapter를 분류하여, 양측의 합의 내용을 협정 본문에 규정
부속서	방대한 분량의 내용이내(양허안 등), 특정 분야의 합의 내용을 규정
부록	부속서 중에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 내용을 규정
서한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해석 내용 또는 협상 과정의 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

합의 내용 본문은 크게 상품 분야, 무역 규범 관련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

표2. 협정 본문 주요 내용 (예시: 한·EU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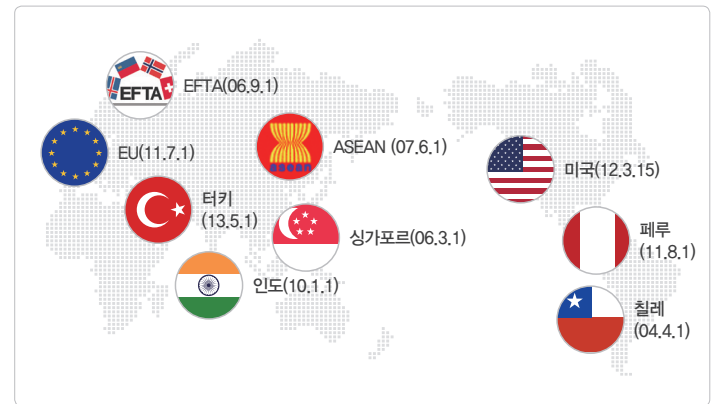
장	Chapter 명칭	장	Chapter 명칭
제1장	목표 및 일반 정의	제9장	정부조달
제2장	내국민 대우 및 상품 분야 시장 접근	제10장	지적재산
제3장	무역구제	제11장	경쟁 정책
제4장	기술장벽(TBT)	제12장	투명성
제5장	위생검역(SPS)	제13장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제6장	통관 원활화	제14장	분쟁 해결 절차
제7장	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 상거래	제15장	제도 일반 및 최종 규정
제8장	지급 및 자본 이동		

**1380** 우리나라가 각 국과 체결한 FTA 협정문을 열람할 수 있는 곳은?  
FTA 강국 Korea (<http://www.fta.go.kr>)

## FTA 추진 현황



### 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발효 (9건)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EU(유럽연합 28개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타결 (3건)**

 콜롬비아(13.2.21 서명, 14.5.2 비준)

 호주(14.4.8 서명)

 캐나다(14.3.11 타결)

**협상진행 (6건)**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뉴질랜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ASEAN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일본  멕시코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 협력회의)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4건)**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MERCOSUR(Mercado Common Sour, 남미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2. 한-EU FTA와 한-미 FTA 양허 비교**

품 목	한·EU FTA				한·미 FTA				
	한국		EU		한국		미국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기간	기준세율	철폐기간	
자 동 차	중대형 (1500cc 초과)	8%	3년	10%	3	8%	① 발효일 4%로 인하 ② 4년차까지 4% 유지 ③ 5년차부터 무관세	① 가솔린 중소형 2.5%, ② 가솔린 대형 2.5%, ③ 디젤/대중소형 2.5%	① 4년차까지 기준 관세를 유지 ② 5년차부터 무관세
	소형 (1500cc 이하)	8%	5년	10%	5년	8%	① 발효일 4%로 인하 ② 2년차부터균등 철폐 ③ 5년차부터 무관세	2.5%	5%
	기타 (하이브리드)	8%	5년	10%	5년	8%	① 발효일 4%로 인하 ② 2년차부터균등 철폐 ③ 5년차부터 무관세	2.5%	5%
화 물 자 동 차	승합차	10%	즉시	10~16%	즉시	10%	즉시	2%	3년
	디젤 5톤 이하 화물차	10%	즉시	22%	5년	10%	즉시	25%(10)	① 7년차까지 기준 관세를 유지 ② 8년차부터균등 철폐 ③ 10년차부터 무관세
	디젤 20톤 초과 화물차	10%	5년	22%	3년	10%	즉시	25%(10)	
	도로주행 트랙터	8%	5년	16%	3년	8%	즉시	4%	3년
자 동 차 부 품	디젤엔진 부품	8%	즉시	2.7%	즉시	8%	즉시	2.5%	즉시
	기어박스	8%	즉시	4.5%	즉시	8%	즉시	2.5%	즉시
	타이어	8%	즉시	2.5~4.5%	3년	8%	즉시	0~4.2%	즉시, 5년
선 박	선박 완성품	0~8%	즉시	0~2.7%	즉시	0~8%	즉시	0~2.7%	즉시
	부품	0~8%	즉시, 3, 5년	0~2.7%	즉시	0~8%	즉시, 3, 5, 10년	0~6.7%	즉시

품 목	한·EU FTA				한·미 FTA				
	한국		EU		한국		미국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기간	기준세율	철폐기간	
컬러 TV	컬러 TV 완성품	8%	즉시	14%	5년	8%	즉시	0~5%	즉시, 3년
	천연색 음극선관	8%	즉시	14%	즉시	8%	즉시	3%	즉시
	수상기	8%	즉시	14%	5년	8%	즉시	3.9~5%	즉시
냉장고	냉장고 완성품	8%	즉시	1.5~2.2%	즉시	8%	즉시	1.9%	즉시
	부품	8%	즉시	2.2%	즉시	8%	즉시	0%	즉시
에어컨	에어컨 완성품	8%	즉시	2.7%	즉시	8%	즉시	0~2.2%	즉시
섬유류 및 의류	순모직물	13%	5, 7년	8%	즉시, 5년	13%	즉시	7~25%	즉시
	편직제 의류(61류)	8~13%	즉시	2~12%	즉시	8~13%	즉시	0~32%	즉시, 10년
	편직제 의류(62류)	8~13%	즉시	6.5~12%	즉시	8~13%	즉시	0~28.6%	즉시, 10년
	합성섬유 (54/55류)	8~10%	즉시	8%	즉시	8~10%	즉시	0~25%	즉시, 10년
의료용 기기	X선방사선 기기	8%	즉시, 3, 5, 7년	2.1%	즉시	8%	즉시, 3, 10년	0~1.4%	즉시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콘택트 렌즈	8%	3	2.9%	즉시	8%	3년	2%	3년
	심전계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의약품	완제 의약품	8%	즉시, 3년	0%	즉시	8%	즉시, 3년	0%	즉시
	비타민제	6.5%	즉시, 3년	0%	즉시	6.5%	즉시	0%	즉시
	호르몬제	0~6.5%	즉시	0%	즉시	0~6.5%	즉시	0%	즉시
	항생제	6.5%	즉시	0%	즉시	6.5%	즉시	0%	즉시

품 목	한·EU FTA				한·미 FTA				
	한국		EU		한국		미국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기간	기준세율	철폐기간	
화장품	기초 화장품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헤이스 파우더	8%	5년	0%	즉시	8%	즉시	0%	즉시
	향수	8%	3년	0%	즉시	8%	3년	0%	즉시
	립스틱	8%	3년	0%	즉시	8%	3년	0%	즉시
	헤어 린스	8%	5년	0%	즉시	8%	5년	0%	즉시
비철 금속	동·동 제품	8%	즉시, 3, 5, 7년	0~5.2%	즉시, 3년	8%	즉시, 3년	0~3%	즉시, 3년
	알루미늄과 제품	8%	즉시, 3, 5년	0~10%	즉시	8%	즉시, 3, 5년	0~6.5%	즉시, 3, 5, 10년
석유 화학	합성 수지	6.5%	즉시, 3, 5년	6.5%	즉시, 3년	6.5%	즉시, 3, 5, 10년	6.5%	즉시, 3, 5, 10년
	합성 고무	6.5%	즉시, 3, 5, 7년	0%	즉시	6.5%	즉시, 5, 10년	0%	즉시
합판류	합판	8~12%	5, 7년	6~10%	3년	8~12%	10년	3~8%	10년
	섬유판	8%	5, 7년	7%	3년	8%	10년	3.9~6%	10년
	파티클 보드	8%	5, 7년	7%	3년	8%	10년	0%	즉시
기타	구두 (드레스화)	13%	즉시	17%	즉시	13%	즉시	0~55.3%	즉시, 12(비)
	가족제 가방	8%	즉시, 3년	2.7~9.7%	즉시, 3년	8%	즉시	8~10%	즉시
	복사기	8%	즉시	3%, 6%	즉시, 3년	8%	즉시	0~3.7%	즉시
	서류 절단기	8%	즉시	2.2%	즉시	8%	즉시	0~2.6%	즉시



### 3.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국가명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한국	(발효) ASEAN, EFTA, 인도, 칠레, 싱가포르, EU, 페루, 미국, 터키, (서명/타결)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한중일, 베트남, 중국, RCEP, 뉴질랜드, (협상재개/여건 조성) 일본, 멕시코, GCC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EFTA	한국, EEA(EFTA-EU FTA), 한국, EEA(EFTA-EU FTA), 콜롬비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알바니아, 요르단, 이스라엘, 멕시코, 이집트, 칠레, 캐나다, 페루, 홍콩, 크로아티아, 터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모로코, 튀니지,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알제리,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CEPA, 베트남, 러시아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중미	ASEAN
ASEAN	한국, 인도, 일본, AFTA, 중국, 호주-뉴질랜드	EU	EFTA, 대만, 미국
EU	한국, CARIFORUM, EFTA, FYROM SAA, EEA, EU 페로 제도 FTA, 남아프리카공화국 TDCA, 레바논 AA, 멕시코 AA, 모로코 AA, 안도라 CU, 몬테네그로 SAA, 요르단 AA,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SAA, 세르비아 SAA, 시리아 CA, 알바니아 SAA, 알제리 AA, 이스라엘 AA, 이집트 AA, 크로아티아 SAA, 터키 CU,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AA, OCTs, 칠레 AA, 튀니지 AA	ACP, ASEAN, CAN AA, GCC, MERCOSUR, 리비아, 에라도르, 우크라이나, 인도, 캐나다, 콜롬비아, 페루, 말레이시아,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몰도바, 베트남	러시아, 벨라루스,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이란, 카자흐스탄, 코소보, 일본, 중국
미국	한국, CAFTA-DR, NAFTA,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요르단, 이스라엘, 칠레, 오만,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호주	TPP, 말레이시아 FTA(TPP에 통합), (협상중) 아랍에미리트, 태국, 에라도르, FTAA, SACU	뉴질랜드(TPP로 통합), 대만, 베트남, 이집트, 쿠웨이트, TAFTA, 파키스탄
캐나다	한국, EFTA, NAFTA, 이스라엘, 페루, 요르단,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개정 협상중)	CARICOM, EU, 일본, TPP, 도미니카공화국, FTAA, 싱가포르, CA4, 모로코, 우크라이나, 인도	모로코, 우크라이나, 태국, MERCOSUR, Andean Community
멕시코	EFTA, EU, MERCOSUR ECA, G3, NAFTA, Northern Triangle, 니카라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스라엘, 일본,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한국, 싱가포르, 파나마, FTAA, 중미	뉴질랜드, 브라질, 에라도르, 중앙아메리카, 호주, SICA
칠레	한국, TPP P4, CAOM, Trans Pacific SEP, EFTA, EU, MERCOSUR ECA,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라도르, 온두라스,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쿠바, 터키, 파나마, 페루, 호주	FTAA, 말레이시아, 베트남, 에라도르,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국가명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콜롬비아	한국, EFTA, EU AA, G3, Northern Triangle, CAN CU, 칠레, 캐나다	FTAA, 싱가포르, 파나마	멕시코 · 페루
페루	한국, 싱가포르, 미국 TPA, CAN CU, EFTA, 중국, 칠레	Central American Countries, 페루, TPP 확대	CARICOM, GCC,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홍콩, 러시아, 모로코, 이집트
인도	한국 CEPA, SAFTA, ASEAN, MERCOSUR PTA, 싱가포르 CECA, 스리랑카, 일본 CEPA, 칠레 PTA, 부탄 TA, 아프가니스탄, 네덜(Treaty of Trade)	EFTA, EU, GCC, SACU, 말레이시아 CECA, 모리셔스 CECPA, 태국 CECA, BIMST-EC, 이스라엘, 호주 CECA, 캐나다, 인도네시아 CECA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러시아 CECA, 스위스, 우루과이, 대만, 이란, 이집트, 중국, 터키, 파키스탄, IBSA
싱가포르	한국, EFTA, GCC, 미국, 뉴질랜드 CEP, 파나마, 요르단, 인도 CECA, 일본, 중국, 페루, 호주, TPP P4, AFTA	대만, 멕시코, 우크라이나, 캐나다, 파키스탄	EAC, 모로코, 스리랑카, 이집트
일본	ASEAN EPA, 말레이시아 EPA, 칠레, 인도네시아 EPA, 베트남 EPA, 브루나이 EPA, 스위스 EPA, 싱가포르 EPA, 인도 EPA, 멕시코 EPA, 태국 EPA, 필리핀 EPA, 페루 EPA	GCC, 호주 EPA, 콜롬비아 EPA, 캐나다, 몽골, 일한중	한국 EPA, EU EPA, 뉴질랜드, 대만, 미국, TPP
중국	ASEAN, 뉴질랜드, 대만 ECFA, 마카오 CEPA, 싱가포르, 칠레, 파키스탄, 홍콩 CEPA, 페루, 코스타리카	한국, GCC, SACU,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호주, 스위스, 한중일	MERCOSUR, 인도
인도네시아	AFTA, 일본 EPA	EFTA CEPA, 호주 CEPA, 인도 CECA, 한국 CEPA	칠레, 터키
베트남	AFTA, 일본 EPA	한국, EU, TPP 확대	EFTA, 러시아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 · 스리랑카
터키	한국, EFTA, EU CU,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FYROM, 그루지야, 모로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시리아, 알바니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조지아, 크로아티아, 튀니지, 팔레스타인자치정부	Faroe Islands, GCC,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세이셸, MERCOSUR, 가나, 리비아, 리비아, 몰도바, 카메룬, 코소보, 우크라이나, 몰도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에디오피아, EAC, ECO, 몰타, SACU, 멕시코, 알제리,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EPA, 캐나다, 파키스탄
호주	한국, PACER PLUS, 뉴질랜드, 뉴질랜드-ASEAN, 미국,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파푸아뉴기니(PATCRA)	GCC, UAE, TPP 확대, 중국, 일본 EPA, 인도 CECA, 인도네시아 CEPA, RCEP	PIF, 멕시코
뉴질랜드	TPP,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CEP, 중국, 태국 CEP, 호주, 호주-ASEAN, 홍콩 CEP	한국, RACER PLUS, TPP 확대, 러시아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 RCEP, 인도	멕시코, 미국, 대만, 일본



CHAPTER. 02

# FTA 활용 절차

01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 ····· 20

02 수입업체의 FTA 특혜 적용 ····· 21

# 수출업체의 원산지 증명



절차	내용	확인 방법 및 참고자료
FTA 발효국 확인	우리나라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 간에 FTA가 발효되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강국, KOREA(<a href="http://www.fta.go.kr">www.fta.go.kr</a>)</li> <li>FTA1380(<a href="http://www.fta1380.or.kr">www.fta1380.or.kr</a>)</li> </ul>
품목분류	품목번호(HS코드)에 따라 관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I-PASS에서 품목번호 확인 (<a href="http://portal.customs.go.kr">portal.customs.go.kr</a>) ▶ 품목분류정보</li> <li>수출입국의 HS코드 확인 (<a href="http://fta.customs.go.kr">fta.customs.go.kr</a>) ▶ 세계HS정보시스템</li> </ul>
원부자재 품목분류	생산 제품에 투입된 자재목록(Bill of Materials; BOM)을 작성하고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li> <li>FTA1380(<a href="http://www.fta1380.or.kr">www.fta1380.or.kr</a>)</li> <li>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li> </ul>
원산지 확인서 취합	작성된 자재목록(Bill of Materials; BOM)을 기준으로 완제품과 동일한 일정단위의 세번을 갖는 비역내산 원재료 또는 가격비율이 높은 원재료를 주요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취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력업체에 요청</li> <li>※ 협력업체는 원산지확인서 제3차 확인제도, FTA 컨설팅 등 활용</li> </ul>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제품의 HS Code 6단위로 해당 FTA협정의 원산지결정 기준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1380(<a href="http://www.fta1380.or.kr">www.fta1380.or.kr</a>)</li> <li>트레이드네비(<a href="http://www.tradenavi.or.kr">www.tradenavi.or.kr</a>)</li> <li>YesFTA(<a href="http://fta.customs.go.kr">fta.customs.go.kr</a>)</li> </ul>
원산지 판정	수출품이 수출지역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에서 직접 판정</li> <li>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li> <li>FTA-Korea, FTA PASS 활용</li> <li>FTA 컨설팅 등 활용</li> </ul>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면 원산지증명서 작성, 수입자에게 제공, 기관발급이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신청, 자율 발급이면 직접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세청 UNI-PASS(<a href="http://portal.customs.go.kr">portal.customs.go.kr</a>)</li> <li>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a href="http://cert.korcham.net">cert.korcham.net</a>)</li> </ul>
증빙서류 보관	당해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 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Korea</li> <li>FTA-PASS</li> </ul>

# 수입업체의 FTA 특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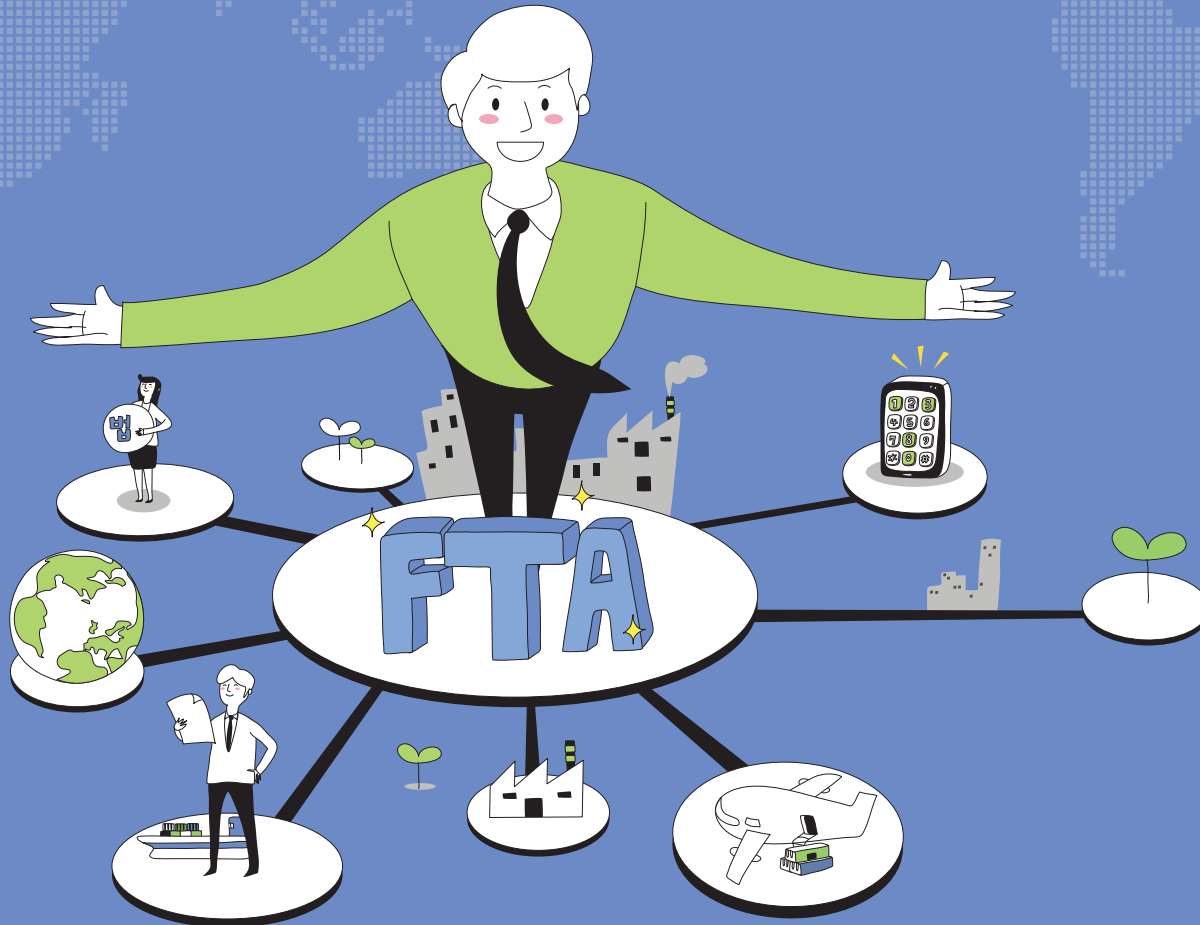


절차	내용	확인 방법 및 참고자료
FTA 발효국 확인	우리나라와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 간에 FTA가 발효되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강국, KOREA(<a href="http://www.fta.go.kr">www.fta.go.kr</a>)</li> <li>FTA1380(<a href="http://www.fta1380.or.kr">www.fta1380.or.kr</a>)</li> </ul>
품목번호 확인	품목번호(HS코드)에 따라 관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I-PASS에서 품목번호 확인 (<a href="http://portal.customs.go.kr">portal.customs.go.kr</a>) ▶ 품목분류정보</li> <li>수출입국의 HS코드 확인 (<a href="http://fta.customs.go.kr">fta.customs.go.kr</a>) ▶ 세계HS정보시스템</li> <li>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li> <li>FTA1380(<a href="http://www.fta1380.or.kr">www.fta1380.or.kr</a>)</li> <li>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li> </ul>
FTA 특혜 관세율 확인 및 효과분석	협정에서 정한 FTA 특혜관세율을 파악,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 관세율과 FTA 협정관세율을 비교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1380(<a href="http://www.fta1380.or.kr">www.fta1380.or.kr</a>)</li> <li>YesFTA(<a href="http://fta.customs.go.kr">fta.customs.go.kr</a>)</li> <li>트레이드네비(<a href="http://www.tradenavi.or.kr">www.tradenavi.or.kr</a>)</li> </ul>
원산지 증명서 수령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상대 수출자에게 요구, 원산지증명서 양식, 발급기관, 인정,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정별 원산지증빙서류 제출 면제 대상 여부 확인</li> <li>※ YesFTA(<a href="http://fta.customs.go.kr">fta.customs.go.kr</a>), FTA1380(<a href="http://www.fta1380.or.kr">www.fta1380.or.kr</a>)</li> </ul>
FTA 특혜 관세 적용 신청	수입신고시 「합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 전과 수리 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YesFTA(<a href="http://fta.customs.go.kr">fta.customs.go.kr</a>)</li> <li>FTA1380(<a href="http://www.fta1380.or.kr">www.fta1380.or.kr</a>)</li> </ul>
증빙서류 보관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하여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자는 관련 서류를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간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Korea</li> <li>FTA-PASS</li> </ul>

## 1380 FTA 활용 절차 참고 사이트

FTA1380 (<http://www.fta1380.or.kr>),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 YesFTA (<http://fta.customs.go.kr>)

# FTA 활용지원 사업별 시책



01 현장 밀착 지원	24
02 인식 제고	30
03 협력기업 지원	33
04 품목분류 애로해소	37
05 인력 양성	40
06 원산지관리시스템 확충	46
07 FTA 활용 수출지원	48
08 사후검증 지원	58
09 알아두면 좋은 제도	60

# 01 현장 밀착 지원



## 1. FTA 1380 (www.fta1380.or.kr)

전국 어디에서든 전화 한 통화로 FTA 활용 관련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상담 대상** : FTA 활용에 관심이 있는 기업 및 개인
- **상담 분야** : FTA에 관한 일반 궁금증부터 전문 컨설팅까지 지원

<p>▶ <b>정보제공</b> FTA 활용정보 통합제공 해외 전문가 초청 FTA 활용 비즈니스전략 정보 제공</p>	<p>▶ <b>교육 및 홍보</b> FTA 실무교육 제공 대기업 협력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회사별 원산지관리시스템 Edu-sulling(교육+컨설팅)</p>
<p>▶ <b>애로해소</b> FTA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정책 건의 합정문 및 이행 관련법령 유권해석 지원 FTA 원산지 증명서 증빙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p>	<p>▶ <b>컨설팅</b>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HS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 관련 컨설팅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p>

### ■ 상담 절차

- ① 상담원이 1차로 애로사항 접수
- ② 업종별·분야별 전문 상담사의 맞춤형 상담
- ③ 전화 상담만으로 부족한 경우, 전국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내 전문가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

■ **운영 시간** : 월~금 09:00~18:00

■ **문의처** : 국번없이 1380  
(해외에서는 82-2-1380)

■ **인터넷 1380** : 온라인(www.fta1380.or.kr)에서도  
업종별·협정별·애로요인별  
전문 상담 가능



## 2. FTA 원스톱 지원센터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기업상담관이 FTA 활용애로 진단을 통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신청** : YesFTA (<http://fta.customs.go.kr>)

- FTA 원스톱지원센터 ▶ 지역선택 ▶ 신청서 작성 ▶ 보내기(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세관)

■ **진단** : 세관의 FTA 기업상담관

- 기업의 FTA 활용 현황을 분석하여 시스템, 인력 등 미흡 분야를 진단합니다.

■ **맞춤형 지원** : 중소기업 FTA 활용 역량에 따라

-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별 맞춤형 Total 컨설팅 제공

진단 항목	기업 활용 역량에 따른 종합 지원
원산지 관리 현황	BOM 작성부터 FTA-PASS 구축·활용 교육
인증 취득 여부	신규 인증 취득 및 갱신 지원
검증 대비 현황	자료 보관 실태 진단 및 Sample 제시 등의 모의검증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C/O, 원산지확인서 발급 안내

■ **사후관리**

- FTA 활용 지원 이후 기업의 FTA 활용 동향,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3. 찾아가는 FTA 컨설팅

관세사 등 FTA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FTA를 활용하여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및 협력기업
- 지원 내용 :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사후검증 대응 등 FTA 활용 전 과정을 종합 지원
  -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판정
  - 원산지증명서(확인서) 작성·발급 및 증빙서류 유지·관리
  - 원산지관리시스템(FTA-Korea, FTA-PASS) 구축·운영
  - 인증수출자 취득·갱신
  - 사후검증 대응 지원

#### ■ 기관별 신청방법, 특화분야, 컨설팅 비용

구분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수행기관	지역FTA 활용지원센터	FTA무역종합 지원센터	사업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서 작성·제출)	온라인 신청 (fta1380.or.kr)	온라인 신청 (fta.customs.go.kr) 또는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exportcenter.go.kr)
특화분야	지역유관기관 합동 컨설팅, 제3자확인, 지역기반으로 접근 (활용) 편이	공급망 컨설팅, 종합 컨설팅(10일), FTA-Korea	인증수출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공적증명 분야, FTA-PASS	FTA와 연계한 수출컨설팅
비용 자부담비율	무료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무료, 10~50억원 10%, 50~500억원 20%, 500억원 초과 30%		

### 4. 업종별 FTA 활용 콘텐츠 개발

기업의 FTA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업종별·품목별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업종별 FTA 실무자 교육을 운영합니다.

#### ■ 지원 대상 : 희망 기업

####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주관	기간
업종별 FTA 실무자 교육	8개 업종별 FTA활용 실무자 교육 추진 • 기계, 고무·화학, 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 의류기기, 농수산물공식품 등	산업부 KOTRA	'14.6월 ~12월
업종별 e-러닝	자동차, 섬유, 전자·정밀기기 등 업종별 교육 콘텐츠 마련	산업부	'14.하반기
품목별 실무매뉴얼	FTA 수출이 많고 영세기업이 밀집된 품목의 실무매뉴얼 발간 • 자동차부품(제동장치, 필터), 기계(밸브), 섬유(합성섬유, 화학(화학품))	산업부 FTA센터	'14.10월
품목분류 정보제공	자동차,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의류 등에 대해 품목분류 정보제공	관세청	'14.하반기

#### ■ 지원 절차

구분	지원절차
업종별 FTA 실무교육	KOTRA 아카데미 홈페이지( <a href="http://www.kotraacademy.com">www.kotraacademy.com</a> ) ▶ 공지사항 ▶ 'FTA활용 업종 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기업 모집 공고' 참조
업종별 e-러닝	FTA 강국, KOREA( <a href="http://www.fta.go.kr">www.fta.go.kr</a> ) 접속 ▶ 'FTA사이버연수원' 클릭
품목별 실무매뉴얼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인터넷 FTA 1380 ( <a href="http://www.fta1380.or.kr">www.fta1380.or.kr</a> ) 배포
품목분류 정보제공	관세청 YesFTA( <a href="http://fta.customs.go.kr">http://fta.customs.go.kr</a> )에서 자료 배포

#### ■ 문의처

구분	문의처
업종별 FTA 실무교육	산업부 활용촉진과 (044-203-4156) KOTRA 글로벌연수원 (02-3497-1195)
업종별 e-러닝	산업부 총괄기획과 (044-203-4126)
품목별 실무매뉴얼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현장지원실 (02-6000-7592)
품목분류 정보제공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042-481-3211)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1과 (042-714-7523)

■ 문의처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FTA 사후검증지원실(☎1380)
-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센터	전화번호	센터	전화번호
부산센터	051-990-7125	강원센터	033-257-4071
대구센터	053-222-3111~2	충북센터	043-229-2729, 2722
인천센터	032-810-2836	충남센터	041-539-4581
광주센터	062-350-5863	전북센터	063-711-2047, 2045
대전센터	042-480-3045, 3076	전남센터	061-288-3831
울산센터	052-287-3060/1	경북센터	054-454-6601(134)
경기센터(남)	031-546-6772, 6770	경남센터	055-210-3043
경기센터(북)	031-995-7480~1	제주센터	064-759-2577

- 관세청 : 각 사업세관 관할 본부세관 FTA 담당부서

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서울본부세관	FTA 1과	02-510-1568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FTA과	053-230-5251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FTA과	051-620-6637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FTA 1과	032-452-316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2

- 중소기업진흥공단 : 본사 글로벌사업체(02-769-6947, 6957) 및 각 지역본부 수출협력팀

본부	전화번호	본부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02-6678-4115	대구지역본부	053-601-5262
인천지역본부	032-450-0533	경북지역본부	054-476-9312
경기지역본부	031-259-7904	광주지역본부	062-600-3051
강원지역본부	033-259-7634	전남지역본부	061-280-8040
대전지역본부	042-866-0153	부산지역본부	051-630-7404
충남지역본부	041-621-3675	울산지역본부	052-703-1132
충북지역본부	043-230-6833	경남지역본부	055-212-1373
전북지역본부	063-210-9911	제주지역본부	064-751-2054

## 02 인식 제고



### 5. CEO 인식 제고

중소기업 CEO의 FTA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FTA 활용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CEO

■ 지원 내용 : FTA 활용 인식 제고 및 정보 제공

- CEO 대상 FTA 활용 교육, 조찬·주말 'FTA 바로알기' 교육 운영

교육과정	CEO교육과정·모임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	산업단지 CEO 자생모임 (산업단지공단, FTA센터)	FTA 바로알기 (중소기업청)
계획인원	350명(2회)	900명(25회)	800명(20회)

- CEO 대상 「FTA 알리미」 서비스(FTA무역종합지원센터, 월 2회), 「FTA 무역 리포트」 제공(관세청, 분기 1회)

■ 신청·접수 : 각 기관에서 CEO 정례·자생 모임 및 CEO 교육과정을 홍보

■ 문의처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02-6000-4683
- 중소기업청 042-481-3959
- 한국생산성본부 02-724-1073
- 한국표준협회 02-2624-0265

### 6.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FTA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파합니다.

■ 참가 대상

부문	참가 대상	내용	시상
기업부문	중소·중견기업	FTA활용 비즈니스 모델, FTA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한 우수사례	대상 1, 최우수상 4, 우수상 10
학생부문	학부·대학원생	FTA활용 정책 아이디어, 활용모델에 관한 연구, 가상 모델 등에 대한 사례	대상 1, 최우수상 1

■ 포상 내용

- 응모된 FTA 활용 사례를 비즈니스 모델별로 구분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입상작 주제 발표 및 시상식 거행(10월)
- 발굴된 우수사례의 책자 발간·배포, 홈페이지 게재, FTA 교육·컨설팅에 활용, FTA 비즈니스 석사 수업에 활용

■ 신청·접수 :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 경진대회 계획 공고

- ※ 산업부, 관세청, 중기청,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이 공동 개최

■ 문의처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02-6000-4684
-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044-203-4155





## 7. FTA 활용 전략 수립 지원

기업이 FTA를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를 활용하기에 앞서 사전 편익계산 등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FTA 활용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FTA-Preview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기대편익과 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툴 제공
FTA-Helper	중소기업이 FTA 사후검증 준비 상태를 자가 점검하고, FTA원산지관리시스템을 보다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툴 제공
FTA 활용전략 수립교육	'FTA 활용 업종 전문인력양성' 교육(KOTRA진행)에서 다양한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및 성공사례 등 교육을 통해 기업이 자사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접수

- (FTA-Preview, Helper) FTA 1380 홈페이지(fta1380.or.kr)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엑셀(Excel) 프로그램)
- (FTA 활용전략 수립교육) KOTRA 글로벌연수원을 통해 신청

■ 문의처

- (FTA-Preview, Helper)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국번없이 1380
- (FTA 활용전략 수립교육) KOTRA 글로벌연수원 02-3497-1198

## 8. 동반성장 FTA 활용 부문 포상

수출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FTA활용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하여 기업의 FTA 경쟁력을 향상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공로를 포상합니다.

■ 참가 대상

부문	내용	포상
우수 기업 및 공공기관 부문 (단체 또는 개인)	대·중소기업 간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하여 FTA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 대기업(중견기업, 공공기관 포함)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심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FTA 활용 지원 부문 (개인)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FTA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기여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협력관계에 있는 수출기업과 협력기업이 동시에 참가하거나 관련기업, 협회 및 유관기관의 추천시 가점 부여

■ 주요 내용

- 기업간 파트너로서 FTA활용 협력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사례
- 협력기업이 인식 전환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이 이를 지원하는 등 FTA활용 역량 강화의 선순환 사례
- 인프라와 역량을 바탕으로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등 FTA 활용에 적극 대응하여 창출된 FTA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사례

■ 신청·접수 : 공고에 따라 신청 양식을 갖추어 담당자에게 제출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044-203-4122

## 9. 원산지 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선정 지원

협력업체의 자율적 원산지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협회·단체가 원산지 확인서 관리 우수기업을 선정,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수출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 ※ 2014년 1월 섬유산업연합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으로 각각 13개, 15개 업체 선정
- **지원 내용** :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수출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우대
  - 수출스타트업(무역협회), 수출첫걸음(KOTRA), 수출역량강화(중소기업청), FTA 선도기업(KOTRA)에 지원시 가점 부여
  - 온라인 해외마케팅(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시 우선 지원
- **신청·접수** : 각 협회·단체 공고 후 신청방식에 따라 담당자에게 신청
  - 2014년 7월 이후 4개 협회·단체(섬유산업연합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서 사업 추진 예정
  - ※ 신청서류 :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와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044-203-4151

### 1380 원산지 확인서란?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생산자가 작성·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 10.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제도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제3의 기관(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 협력사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하고, 확인기관 명의로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수출(원청)기업에 원재료나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기업
- **지원 내용**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 확인 등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 종합 컨설팅 지원
  -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 확인, 제조공정도·BOM 작성방법, 원산지확인서 검증, 근거서류 보관 등
  - 수출기업과 협력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교육과 연계한 원산지확인서 작성·관리·검증 등
    - ※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소속의 제3자 확인전담 관세사 또는 지역FTA센터와 연계한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가 관련 서류 검토·확인 및 현장 컨설팅
- **지원기관**
  - (상반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남부), 충남, 경북, 경남FTA센터
  - (하반기) 전국 16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로 확대 시행 계획
- **신청방법** : 각 지역FTA센터에 비치된 제3자확인사업 신청서 작성·제출
- **문의처** : 8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구분	담당자	직통전화	이메일
부산센터	이신재	051-990-7126	sj6291@bccci.or.kr
대구센터	박경현	053-222-3105	gooddady@nate.com
인천센터	김기호	032-810-2835	kkh@incham.net
광주센터	송채수	062-350-5886	cssong@hanmail.net
경기센터(남부)	오태경	031-546-6776	tkoh@gfeo.or.kr
충남센터	남성철	041-539-4534	cnfta@naver.com
경북센터	김동환	054-454-6601(134)	kimdh1@korcham.net
경남센터	서제완	055-210-3043	sjw@changwoncci.or.kr

※ 하반기 시행 8개 지역센터는 '3. 찾아가는 FTA 컨설팅(26p)'의 연락처로 문의

## 04 품목분류 애로해소



### 12.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제도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
- **지원내용** :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관세율표의 어떤 품목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수출입 신고 전에 세율과 수출입 제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고자 할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 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특별민원회신제도
- **신청·접수**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우편·인터넷·방문 신청하면 30일내 처리  
 ※ 신청서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 물품 설명서, 견본
-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 1380 HS(Harmonized System) Code란?

- 국제거래물품에 대해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10단위, 미국, EU 8단위, 일본 9단위, 중국 10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 품목분류에서 2단위는 '류', 4단위는 '호', 6단위는 '소호'. 예를 들어 진주목걸이의 HS CODE 6단위는 7116.10(71류, 16호, 10소호) 우리나라는 이를 다시 세분하여 천연 진주로 만든 것은 7116.10.1000으로, 양식 진주로 만든 것은 7116.10.2000으로 구분

### 11.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부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세관장이 직접 확인하여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수출용 원재료)
- **지원 내용** :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세관장 확인
  - 품목분류(HS) 일치 여부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 자재명세서(BOM) 등 증빙서류 검토·보관 안내
- **신청·접수** : 전국 6개 주요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세관)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세관장 확인물품 조회** : YesFTA(<http://fta.customs.go.kr>) ▶ 원산지 확인서 사전확인)
- **문의처** : 각 본부세관 FTA 담당부서

세관	전화번호	팩스	e-Mail
서울본부세관	02-510-1703	02-2015-7871	fta-seoul@customs.go.kr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051-620-6881	051-620-1140	fta030@customs.go.kr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032-452-3160	032-891-9186	fta020@customs.go.kr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053-230-5252	053-230-5626	fta120@customs.go.kr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	062-975-8052	062-975-8049	fta071@customs.go.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7	031-8054-7046	fta016@customs.go.kr

### 13. 품목분류 조기심사 요청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기간은 기본적으로 30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조기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15일로 단축하여 심사합니다.

- **신청권자**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자격이 있는 자 중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

#### ※ <조기심사 신청사유>

- ① 해외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FTA원산지 검증확인이 있는 경우
- ② 해외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한 경우
- ③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 **지원 내용** :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 요청을 하면 동 기간 내에 회신함

- **신청·접수**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우편·인터넷·방문 신청하면 15일내 처리

※ 신청서류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특별한 사유 포함), 물품 설명서, 견본

-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 1380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품목번호 확인하기 ▶ <http://portal.customs.go.kr> ▶ 품목분류정보
- 수출입국의 HS CODE 확인(세계HS정보시스템) ▶ [http://fta.customs.go.kr/kcshome/wtm\\_index.po](http://fta.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 14. 상대국의 사전심사 활용 가이드 마련

우리나라와 FTA 협정국간 동일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가 상이한 경우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수출기업 및 수입 기업

#### ■ 지원 내용

- 우리나라와 FTA 발효국과 동일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 FTA 활용 애로 발생
- 상대국의 품목분류 담당기관, 사전심사제도 운영 여부(신청서 포함), 품목분류 사례 등에 관한 활용 가이드 제공

#### ■ 제공 기관

- FTA무역종합지원센터([www.fta1380.or.kr](http://www.fta1380.or.kr)),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관세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업종별 단체 등
- ※ 반기별로 자료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자료를 지속 제공

####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044-203-4153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02-6000-4628



## 15. FTA활용 재직자 실무교육

FTA활용 실무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FTA활용 실무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합니다.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 지원 내용

기관	주요 교육 내용	문의처
KOTRA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FTA활용 업종별 맞춤형 교육	02-3497-1195
FTA무역 종합지원센터	FTA종합실무 업종·협력사별 맞춤형 교육 - 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FTA School), 업종별 특화교육, 원산지관리시스템교육, 공급망교육 등	02-6000-4682
지역FTA 활용지원센터	지방 특화 산업 연계 교육 FTA원산지관리 특화교육(대한상의 공동추진)	www.fta1380.or.kr ▶ 센터소개
중소기업청	FTA수출마케팅 등 지방중소기업 실무자 대상 지역별·업종별 교육, 원산지 특화교육	042-481-3959
관세청	FTA활용사례, 관세행정 실무	042-421-3215
국제원산지 정보원	기업의 FTA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031-6000-743

■ 신청·접수 : 각 기관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16. FTA 전문인력 양성

대학 FTA활용 강좌, FTA비즈니스 석사과정 개설, FTA컨설턴트 양성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FTA 전문인력 부족 애로를 해소합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하여  
관련 인력 배출

- (대학 FTA활용 강좌) 대학내 상경계 학과(경영, 무역, 국제관계, 통상 등)에 FTA활용 강좌(전공, 교양)를 개설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FTA인력 저변 확대  
※ 2014년에 22개 대학, 44개 강좌 지원 예정
-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중소기업의 FTA활용 비즈니스 전략을 지원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FTA관련 대학원을 선정하여 2017년까지 지원  
※ 서울대, 성균관대, 인하대, 조선대, 부경대, 충남대, 경북대에 석사과정 개설
- (FTA 컨설턴트) 무역관련 경험이 풍부한 퇴직인력을 대상으로 FTA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FTA 컨설턴트로 양성  
※ 2012년 80명, 2013년 120명 등 사업 개시 이후 총 200명의 컨설턴트를 배출하여 FTA활용상담, 수출컨설팅 등 진행

■ 신청·접수

- (운영기관) 상반기 중 FTA 인력양성 전담위탁기관(KOTRA)에서 별도 공고  
※ 석사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선정된 7개 대학을 2017년까지 한시 지원  
- 공고에 따라 신청 양식에 맞추어 모집 기간 내 접수
- (수강생) 해당 운영기관의 일정에 맞춰 수강신청 및 지원신청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044-203-4122
- KOTRA 글로벌연수원 02-3497-1199

## 17. 특성화고 FTA 활용 교육

중소기업의 여건에 적합한 원산지 실무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FTA 교육을 실시합니다.

### ■ 지원 대상 : 희망하는 특성화고의 졸업 예정자

※ 희망하는 특성화고와 협력하여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지원

### ■ 지원 내용

-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실무 위주의 교육과 산업현장 실습을 진행
  - ※ 방학기간·방과후(주말·야간) 등을 활용하여 실습 위주 실무교육 추진
- 교육 수료 후 지역 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통해 취업 지원
- 지역 FTA센터에 강사로, 취업연계 활동비, 교재비, 운영경비 등 지원

###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044-203-4125

## 18. FTA 원산지 관리 인력 채용 지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가 원산지관리 전문 인력을 신규로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 지원 대상 :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원산지관리사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제조업 및 일부 지식기반서비스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기통신업, 광고 대행업, 경영컨설팅업 등 24개 업종
- 원산지관리사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 ■ 지원 내용 :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년간 1,080만원 지급

- 임금의 75% 한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4차례 구분 지급
- 동일 사업주에 대하여 누적 3~4명 한도

### ■ 신청·접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2014년 접수 : 3차(5.31), 4차(7.31), 5차(9.30), 6차(11.28)
  - ※ 신청서류 : 고용창출지원 사업신청서, 고용창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 문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국번없이 1350

- ※ 상세내용 안내 : 고용보험위원회(www.ei.go.kr) ▶ 고용보험정보 ▶ 기업혜택 ▶ 고용창출지원 ▶ 전문인력채용지원

## 19. FTA 전문인력 고용연계

FTA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배출한 우수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FTA관련 구인·구직 매칭 등 다양한 고용연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FTA 관련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중장년 및 구인 기업

■ **지원 내용**

- (구인·구직 매칭) FTA취업특강 및 온라인 채용관 등을 통해 FTA관련 구인·구직 DB를 구축하고 맞춤형 매칭 제공
  - 구인구직 희망시 잡투게더 FTA전문관(www.jobtogether.net)에 등록
- (채용박람회) '14년 중장년 채용페스티벌(6.26일) FTA 컨설턴트 홍보관 운영 및 수출기업 일자리 컨퍼런스(11월)를 통한 채용 지원
  - 채용박람회에 매년 FTA인력관을 설치하여 FTA 관련 고용 유도
    - \* 자세한 사항은 잡투게더(www.jobtogether.net), 워크넷(www.work.go.kr)의 공고 참조
- (기타) 구직자의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직무이해를 위한 산업현장 탐방, 중소기업 요청시 FTA관련 인력 리쿠르팅 대행 및 구인·구직자가 활용할 수 있는 FTA 인력양성 및 인턴제 등 지원제도 안내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044-203-4122
- 무역협회 일자리희망센터 02-6000-5625
- KOTRA 글로벌 연수원 02-3497-1199

## 20. FTA e-러닝


원산지관리·사후검증 등 FTA 활용 방법을 온라인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 중소기업인, 대학생 등 FTA에 관심 있는 국민

■ **교과 과정**

과정명	교육 대상	주요 내용	교육(학습) 시간
알기 쉬운 FTA 기본편	전체	① FTA 이해 ② 정부의 FTA 활용지원	5시간 / 9차시
현장에 적용하는 FTA 핵심	기업 실무자	① FTA 활용 실무 ② FTA 비즈니스 모델 및 사례 ③ FTA 활용 기업 지원 제도	10시간 / 19차시
FTA 이해 및 활용 (대학 강의용)	대학생	① 세계 시장과 FTA ② FTA 이해 및 활용 준비 ③ FTA 지원 및 보완대책	10시간 / 22차시

■ **학습 과정**

	과정 내용 구성 및 학습 플로우	이러닝 과정 화면
Find	학습목표 및 내용 제시 해당 학습 차시의 사례 및 생각해 볼 내용 확인 FTA 사전 퀴즈 전문가 영상	
Think	주제별 학습 전개 대화형 퀴즈 / 현장 적용 사례 주제별 의견 등록 및 확인	
Action	퀴즈를 통한 주요 학습 내용 점검 꼭 기억해야 할 개념 정리 및 리뷰(핵심노트 다운로드) 다음 학습 내용 확인	

■ **학습 방법** : FTA 강국, KOREA(www.fta.go.kr)에 접속 ▶ Quick Link 중 “FTA 사이버연수원”클릭 ▶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강의 청취

■ **문의처** : FTA사이버연수원 교육담당 031-288-7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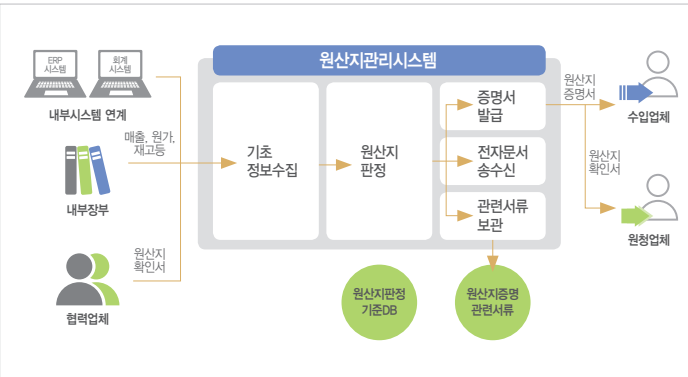
# 06 원산지관리시스템 확충



## 21.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원산지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에 원산지관리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희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FTA-Korea(KTNET), FTA-PASS(국제원산지정보원) 무료 설치 및 컨설팅
  - ※ 농수산물 분야는 FTA 원산지판정기준 등이 반영된 「농수산물 특화 FTA-Kore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14년 말 지원 예정
- **신청·접수** :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직접 연락 하여 신청 양식에 따라 신청
- **문의처**
  - KTNET 엄기석 팀장 02-6000-2030
  - 국제원산지정보원 박성만 팀장 031-6000-722



## 22.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연계 하는 표준형 범용모듈을 보급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희망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FTA 원산지 관리 도모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

### 〈 원산지증명(확인)시스템 구축 지원유형 〉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조건
서버 일체형	1인용 PC형을 다중 사용자용 서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지원	최대 700만원 (50% 이내)
정보시스템 연계형	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PASS, FTA-Korea 연계모듈 구축 지원	최대 1,000만원 (50% 이내)

※ 정보시스템 연계형은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 既보유 기업에 한함

- **신청·접수** : 중소기업청 소관 과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05

### 1380 원산지관리시스템이란?

기업의 일반 업무처리에서 추출한 원산지에 관련된 정보(구매, 원가, 판매 등)를 활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여 일련의 FTA원산지업무 처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

- 최종 수출업체의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
- 부품 공급업체의 경우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





## 23. FTA 활용기업 종합수출지원 사업 연계

FTA 컨설팅 이수 기업을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청의 종합수출지원 사업에 추천해 드립니다.

### 1. 수출스타트업

- **사업 개요** :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1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초보 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 인프라 구축, 해외마케팅 및 수출금융지원 등을 수출지원기관과 공동 제공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 **지원 대상** : 수출을 처음 시작하려는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1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초보기업 중 FTA 컨설팅 이수 기업

####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수출스타트업 기 참여 기업, KOTRA의 수출첫걸음(Export Gateway), 중소기업청의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 지원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수출준비단계 (수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실무역량 Upgrade를 위한 단계별 연수과정</li> <li>• 영문 e-카탈로그 제작 지원</li> <li>• 트레이드 벤처플라자 입주 우대</li> <li>• 전문인력 채용알선(일자리지원센터)</li> </ul>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News Letter, 홈페이지를 통한 해외시장 정보 제공</li> <li>• 환율·원자재 시황 휴대폰 알림서비스 및 고객 맞춤형 안내제공</li> </ul>

구분	항목	내용
해외시장 개척 및 바이어 발굴 단계	해외시장 개척·바이어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해외바이어 거래알선 서비스</li> <li>•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참가 지원</li> <li>• 내수·초보 수출기업 CEO 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li> <li>•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li> <li>• 해외마케팅 자문위원 멘토링 서비스</li> <li>• 무역기금 융자</li> <li>• 통번역 서비스 제공</li> <li>• 전문무역상사 활용 매칭</li> </ul>
	수출이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TA 정보 제공</li> <li>• FTA 맞춤형 상담 및 현장 컨설팅</li> <li>•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One-Point 지원</li> </ul>
	수출금융/보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보험·보증지원(무역보험공사)</li> <li>• 수출금융 지원(수출임은행, 신용보증기금)</li> <li>• 환변동보험 가입 지원</li> </ul>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업체 방문 물류비 절감 컨설팅 지원</li> </ul>

#### ■ 신청·접수 : 상반기 중 FTA컨설팅 기관에서 별도 공고

- 관세청, 중소기업진흥공단,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 이메일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FTA 컨설팅 이수 확인서

#### ■ 문의처(신청 관련)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82
-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02-769-6954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현장지원실 02-6000-7592

#### ■ 문의처(프로그램 관련) : 무역협회 정책협력실 02-6000-5448

#### 1380 FTA 활용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FTA강국, KOREA(www.fta.go.kr) ▶ FTA 간행물 ▶ FTA 활용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북 "FTA를 활용한 수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2. 수출첫걸음(Export Gateway)

- **사업 개요** :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인콰이어리 및 수출전문위원과 1:1 멘토링 서비스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밀착지원
- **지원 대상** : 수출을 처음 시작하려는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50만 달러 미만의 수출초보기업 중 FTA 컨설팅 이수 기업
- **지원 내용** : 1년간 무료 지원

기업 구분	본사(수출전문위원)	해외무역관
내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 컨셉, 해외타겟 시장선정</li> <li>카탈로그 작성, 무역실무교육</li> <li>수시모 커뮤니티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콰이어리 발굴</li> </ul>
수출 준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yKorea Selling offer 등재</li> <li>메일발송을 통한 바이어 발굴</li> <li>인콰이어리 제공, 통번역업무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콰이어리 발굴</li> <li>Counter offer 지원</li> <li>현지 바이어 추가 연락</li> </ul>
수출 초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콰이어리 연계 상담추진</li> <li>계약서검토, 가격견적, 선적, 통관</li> <li>시장조사단파견, 홍보관 참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오퍼 접수</li> <li>개별방한 바이어 상담 지원</li> <li>현지출장 상담 지원</li> </ul>

※ 수.시.모(수출 공공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모임), 수출첫걸음 상담회 등 우선 참여지원 및 안내

### ■ 사업 진행 절차



- **신청·접수** : 상반기(3월) 선정 완료, 하반기(6월중) 추가 모집 예정
  - 신청서 작성 후, 양식에 기재된 e-Mail로 회신(신청양식은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 - 수출첫걸음사업에 게재)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FTA 컨설팅 이수 확인서
- **문의처** : KOTRA 수출첫걸음지원팀 02-3460-7565, ExportGateway@kotra.or.kr

## 3.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수출초보기업 대상)

- **사업 개요** : FTA 컨설팅 이수 기업을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 **지원 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직전년도 직수출 실적 100만달러 이하 기업

###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수출초보기업단계에 3회 참여한 기업
-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중 수출유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단계에 1회 이상 참여한 기업

###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비율)	항목	내용	정부지원한도
수출초보기업 (90%)	수출교육	무역실무 과정, 온라인 무역실무 기초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2,000만원
	홍보용 디자인 개발	외국어 전자·종이 카탈로그 등 제작 지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	해외시장조사, 온라인수출지원, 해외신용조사, 국내외 홍보전문지 활용 상품홍보, 무역비용 규제 시뮬레이션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국내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전시회 마케팅 대행, 온라인쇼핑몰(B2C) 판매대행	

### ■ 신청·접수 : 매년 1월~2월 모집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온라인 신청
- 현장진단 평가시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FTA 컨설팅 이수 확인서

###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4355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4년 지원시책」참조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비즈인포(www.bizinfo.go.kr)

## 24. FTA 활용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연계

FTA 컨설팅 이수 기업을 해외전시회 및 무역사절단 참가에 우대하고, 온라인 해외 마케팅 등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지원해 드립니다.

### 1. FTA 체결국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사업 개요** : FTA 컨설팅 이수 업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 내용** : FTA 체결국에서 개최되는 KOTRA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한국전산업진흥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중소기업청 주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 기업 중 FTA 컨설팅 이수 업체에 대해 가점 부여
- **신청·접수** : 글로벌 전시포털(www.gep.or.kr) 참조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FTA 컨설팅 이수 확인서
- **문의처**
  - KOTRA 단체참가 02-3460-7675
  - 전시산업진흥회 개별참가 02-574-2037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단체참가 02-2124-3185~8

### 2. FTA 체결국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 **사업 개요** : 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사전 FTA 교육·컨설팅 실시
- **지원 내용** : FTA 체결국 시장 상황,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FTA 활용 방법 등 FTA 교육·컨설팅 실시
- **신청·접수** : 무역사절단 파견기관에서 참가 업체 대상 사전 공고
- **문의처** : KOTRA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2-3460-7487, www.kotra.or.kr

## 3. 온라인 해외마케팅

### 〈한국무역협회〉

- **사업 개요** : FTA컨설팅 이수 업체 중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요청 기업에 대한 수출상품 바이어-셀러 매칭 및 온라인 홍보 지원

### ■ 지원 내용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e-카탈로그 제작 지원	tradeKorea.com 신규 가입 후 대상 업체 수출상품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지원
온라인 상시거래알선 지원	[바이어DB 타겟마케팅 서비스] tradeKorea.com 내 바이어DB를 직접 검색해 원하는 바이어 대상 인콰이어리 발송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해외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 및 신흥시장 마케팅오피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온라인 소싱페어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및 수출상담회에서 발굴된 글로벌 빅바이어와의 온라인을 통한 수출상담회 참가 및 매칭 서비스 지원
마케팅 관련 부가서비스 제공	외환은행 수수료 우대 및 해외 바이어 신용정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지원 시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tradeKorea.com 회원 가입 필요	

- **신청·접수** : 트레이드코리아(kr.tradekorea.com) 온라인 신청
  - ※ 신청 시 FTA컨설팅 이수업체임을 밝히면 지원업체 선정 시 우대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 〈중소기업진흥공단〉

- **사업 개요** : FTA 컨설팅 이수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상품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홍보 지원
- **지원 대상** :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 <지원이 안 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 거래처에 등록(기업주 포함), 휴·폐업 중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받은 기업

#### ■ 지원 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제작
- 글로벌 홍보 마케팅(다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및 해외바이어 홍보) 지원

#### ■ 신청·접수 :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or.kr](http://www.gobizkore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FTA컨설팅 이수 확인서 등

#### ■ 문의처 : 고비즈코리아([Gobizkorea](http://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1588-6234

## 4. 수출지원 정보제공

#### ■ 사업 개요 : FTA 체결국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FTA 체결국별 진출 유망 품목, 시장분석 자료 발간

#### ■ 지원 내용 : 중소기업 FTA 활용 가이드북, FTA 활용 우수사례, 해외 바이어용 FTA 활용 영문 홍보 브로셔 등 제공

\* 2013년 섬유산업연합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완료, 2014년 타 협회 추가 예정

#### ■ 신청·검색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 11개 지방중소기업청 및 수출 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http://www.exportcenter.go.kr))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http://www.kita.net)) ▶ TradeSOS ▶ 기업성공사례
- 각 업종별 단체 홈페이지 및 FTA강국, KOREA([www.fta.go.kr](http://www.fta.go.kr))

#### ■ 문의처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 042-481-3959
- 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044-203-4124

## 25. FTA 활용기업 수출금융지원 사업 연계

지역FTA활용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의 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 과정에 수출금융 설명회를 병행 실시합니다.

#### ■ 지원 내용

- (지역FTA활용지원센터) 16개 지역에서 연 2회 수출금융 설명회 실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지사에서 연 1회 수출금융설명회 실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16개 지역본부의 정책자금 설명회에서 수출금융 지원 제도 안내문 배포, 중기청 수출지원센터의 실무자 교육, CEO교육 등에 수출금융지원제도 안내문 배포 및 설명

#### ■ 신청·접수 : FTA활용지원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FTA강국, KOREA([www.fta.go.kr](http://www.fta.go.kr))을 통해 수출 금융설명회 일정 공고

#### ■ 문의처

- FTA활용지원센터 및 지역FTA활용지원센터 : [www.fta1380.or.kr](http://www.fta1380.or.kr)
- 한국산업단지공단 : [www.kicox.or.kr](http://www.kicox.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 [www.sbc.or.kr](http://www.sbc.or.kr)

## 26. FTA 선도기업 육성

FTA 활용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FTA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FTA 체결국 소재 KOTRA 무역관이 1:1 맞춤형 종합수출지원을 제공합니다.

### ■ 지원 내용

단계	기업선정		국내지원		해외지원	
유형	모집·심사	타겟선정	실무교육	맞춤형 컨설팅	시장조사	맞춤형 컨설팅
내용	컨설팅수료/인증보유 기업 위주	기업별 타겟 바이어선정	통관절차, 회계, FTA관세등	원산지 관리 지원, 방문상담	항목별조사 (시장동향, 잠재바이어 정보)	바이어발굴, 현지상담지원, 출장지원 등
기관	KOTRA(본사, 해외무역관) 유관기관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지역별 FTA활용지원센터		KOTRA(해외무역관)	

#### ● 세부 지원 내역

- ① 개별(KOTRA) : 전담마케팅, 해외시장조사, 타겟바이어 방한초청지원, FTA교육 등
  - ② 개별(FTA무역종합지원센터) : 국내 FTA 교육·컨설팅
  - ③ 공동사업 참가지원 : FTA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 ※ 참가비 유료 : 250~350만원 (지역별 상이)

#### ■ 신청·접수 : KOTRA FTA사업팀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

#### ■ 문의처 : KOTRA FTA사업팀 02-3460-7228

## 27. 해외 통관애로 해소

재외공관에 설치된 「FTA 해외 활용 지원반」, 「FTA 현장 해결팀」을 통해 통관 애로 해소를 현지에서 즉시 지원해 드립니다.

### ■ 지원 내용

- 현재 미국, EU, 아세안, 인도, 칠레, 터키 등 FTA 기체결 국가 52개 대사관, 영사관에 FTA 해외 활용 지원반을 설치
- FTA활용 교육·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FTA 설명회 및 FTA활용 수출입 컨설팅 실시
- FTA콜센터 1380,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등 국내 기업의 FTA활용지원 체계와 연계한 해외기업 지원체계 구축

### ■ FTA 해외통관 애로 주요 유형별 1차 대처방법

유형	애로 내용	대처(예방)방법
형식적 오류	C/O 기재사항 불일치, 전자서명 C/O의 원본여부 등 형식적 요건미비로 C/O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준수</li> <li>• 상업서류와 C/O 내용 일치</li> <li>• C/O 출력시 칼라로 앞뒤 양면인쇄</li> <li>• C/O 진위여부 조회시스템 * 활용</li> </ul>
HS상이	동일품목에 대해 계약국간 품목분류 상이시, 수입국의 HS로 특혜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어 특혜관세 배제사례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판정(Advance Ruling)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수입국의 HS 확인</li> <li>• 원산지증명서류에 수입국의 HS 사용</li> </ul>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관세청 영문홈페이지(Information Plaza), 대한상의 무역인중 서비스센터 영문홈페이지(Reference System)에서 조회가능

#### ■ 신청·접수 : 재외공관에 상담 및 문의, 관세청 YesFTA(fta.customs.go.kr) ▶ FTA 원스톱 지원하기 클릭

####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홍보협력과 044-203-4133
-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82

# 08 사후검증 지원



## 28. FTA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사후적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체제구축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 지원 대상

- 상대국 세관 또는 우리나라 세관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수령한 기업
- 원산지 증명서 사후제출 등 사후검증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특혜관세 적용 수출에 따른 회사의 대응 체계 진단 희망 기업

### ■ 지원 내용

- (정보제공·자가검증툴 보급) 사후검증 자가검증툴 FTA Helper 보급과 매뉴얼 보급 및 합동 순회 설명회 개최
  - FTA무역종합지원센터(<http://okita.kita.net>)에서 자가검증툴(FTA Helper)을 다운로드하여 활용
- (사후검증센터 대응지원) FTA사후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의 사후검증 대응 신속 지원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내에 '사후검증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사후검증 진행 기업에 대한 신속 상담 및 지원

### ■ 신청·접수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전화신청

### ■ 문의처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02-6000-7584, [www.fta1380.or.kr](http://www.fta1380.or.kr)

## 29. 인증수출자 갱신 간소화

인증수출자 인증 만료(3년)가 도래한 기업의 인증갱신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 ■ 지원 대상 : 기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

- 지원 내용 : 기업이 인증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점검,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 ▶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인증을 갱신

### ■ 신청·접수 : 각 지역 본부세관에 인증갱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문의처 : 관세청 FTA집행기획과 042-481-3211  
관세고객 상담센터 1577-8577

### 1380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의외) 관세당국이 원산지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및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종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3년	2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혜택) FTA 협정에 따라 상이

협정	혜택
한·EU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 가능
한·아세안	신청 구비 서류가 줄고, 발급 단계의 확인 절차를 생략해 신청 즉시 발급
한·싱가폴	
한·인도	인증 번호만 기재하면 별도의 서명 생략, 상대국 수입 통관 과정에서 우대
한·EFTA	
한·패루	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

(상세내용 참고) 관세청 YesFTA [ita.customs.go.kr](http://ita.customs.go.kr) > 인증수출자 제도



## 30. 무역조정지원제도

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제조업, 서비스업)에게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 : FTA 체결로 인한 수입 급증으로 최근 2년 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기업

구분	피해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기준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청이전 2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10% 이상 감소</li> <li>●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ul>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신청이후 1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5~1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li> </ul>

- 지원 내용 : 정책자금 융자 및 경영·기술 컨설팅, 근로자 지원

구분	요건	지원한도
융자 지원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 이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자금 45억원(지방소재 기업 50억원)</li> <li>● 운전자금 5억원(10억원 이상 시설투자시 운전자금은 10억원)</li> </ul>
컨설팅 지원	매출액 또는 생산량 5% 이상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00만원 이내 보조(소요 비용의 80%)</li> </ul>
근로자 지원	무역조정지원기업, 그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수입상품 증가로 해외이전 기업의 소속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직 지원(전직 서비스 소요비용 지원)</li> <li>● 실업자 맞춤형 직업훈련</li> <li>● 훈련연장급여 지급</li> </ul>

- 신청·접수 :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시접수

※ 무역조정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계획 수립 등 제반 절차 지원

- 문의처 :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662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도 신청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에서 「무역조정지원」 클릭

## 31. FTA 알림 매체

FTA 협상·이행·활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 (함께하는 FTA) 2012년 6월에 창간된 월간지로 FTA 동향과 FTA 관련 기관·기업·인물 소개, FTA 활용 위한 실용 정보 등을 수록

- 매월 15일 경 발간하여 우체국·은행·도서관·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되며, FTA 포털 등에서 E-book으로도 읽을 수 있음.

-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 무상으로 우편 배송

※ 문의·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 홍보협력과 044-203-4131

- (FTA강국, KOREA) 통상 및 FTA 활용 관련 각종 정보 제공과 중소기업 맞춤형 서비스 지원(www.fta.go.kr)

- (FTA 1380) FTA무역종합센터 홈페이지(fta1380.or.kr) 및 모바일 웹(m.fta1380.or.kr)을 통해 FTA활용 종합정보 제공



- (YesFTA 관세포털) 업종별 HS 품목분류 가이드, 세계 각국의 HS 정보 및 원산지 검증 가이드 등 정보제공(fta.customs.go.kr)



- (TradeNAVI) FTA 체결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45개국의 세율, 규제, 인증, 무역통계,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www.tradenav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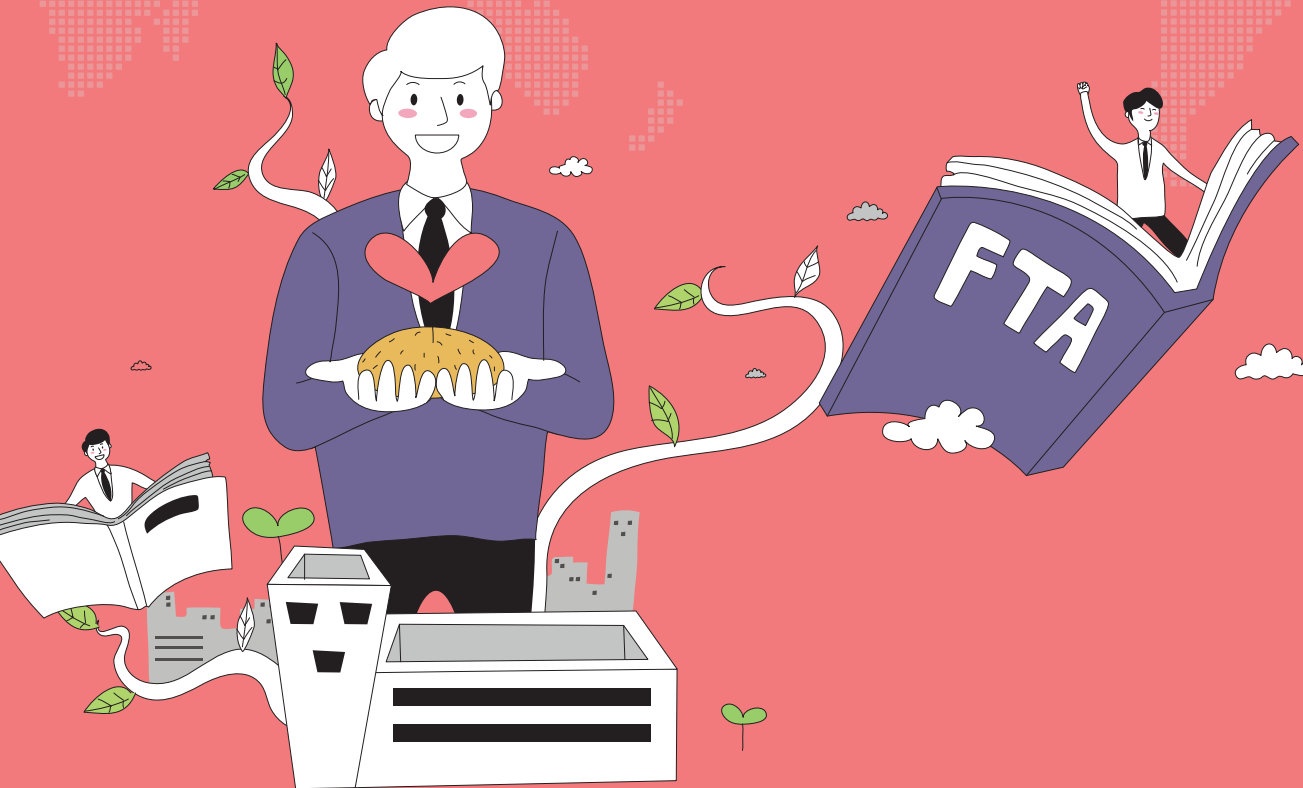


- (쌍방향 소통채널) 실시간 FTA 관련 소식과 정보를 전달받고, 의견 개진 가능한 소통 창구로서, SNS 및 네이버 블로그 운영

- 트위터 : [www.twitter.com/fta\\_korea](http://www.twitter.com/fta_korea)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ftahub](http://www.facebook.com/ftahub)
- 네이버 블로그 : [blog.naver.com/korusfta](http://blog.naver.com/korusfta)



# FTA 활용지원 기관별 시책



01 산업통상자원부	66
02 관세청	67
03 중소기업청	68
04 중소기업진흥공단	68
0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9
06 한국산업단지공단	69
07 국제원산지정보원	70
08 한국전시산업진흥회	70
09 중소기업중앙회	70
10 한국무역협회	70
11 FTA무역종합지원센터	71
12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72

## 1.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명	내용	문의
업종별 FTA 활용 콘텐츠 개발	● 업종별·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업종별 FTA 실무자 교육 실시	활용촉진과 044-203-4156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FTA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FTA 활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기업·학생 부문)	활용촉진과 044-203-4155 FTA무역종합지원센터 02-6000-4684
동반성장 FTA 활용 부문 포상	● 수출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FTA 활용을 통한 동반 성장을 추진하여 기업의 FTA 경쟁력을 향상한 우수사례를 선정, 공로 포상	총괄기획과 044-203-4122
원산지 확인서 관리 우수기업 선정 지원	● 공신력있는 협단체가 원산지확인서 관리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협력업체의 자율적 원산지 관리 역량을 제고(선정 기업 수출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우대)	활용촉진과 044-203-4154
FTA 전문인력 양성	●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선정·지원하여 FTA 전문 인력 배출 ● 대학 FTA 활용 강좌, FTA 비즈니스 석사과정, FTA 컨설팅턴트	총괄기획과 044-203-4122 KOTRA 글로벌연수원 02-3497-1199
특성화고 FTA 활용 교육	● 중소기업의 여건에 적합한 원산지 실무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FTA 교육 시범 사업을 실시	총괄기획과 044-203-4125
FTA 원산지 관리 인력 채용지원	● 중소기업이 원산지관리사를 신규로 3개월이상 고용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1인당 1년내 1,080만원 지원, 누적 3~4명 한도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국번없이 1350)
FTA e-러닝	● FTA 활용 방법을 사이버 공간에서 안내하고 컨설팅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www.fta.go.kr)	FTA사이버연수원 031-288-7143
수출지원 정보제공	● 관세율, 기술규제, 인증 시장정보, 통계 등 통합무역정보제공 ● 해외 바이어용 FTA 활용 영문 홍보브로셔 제공(섬유산업 연합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TradeNAVI (www.tradenavi.or.kr)
무역조정지원	● FTA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제조업, 서비스업)에게 융자 및 컨설팅, 근로자 전직·채취업 등을 지원	총괄기획과 044-203-4124 무역조정지원센터 02-769-6662
FTA 알림	● 함께하는 FTA(월간지) ●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 트위터(www.twitter.com/fta_korea) ● 페이스북(www.facebook.com/ftahub) ● 네이버블로그(blog.naver.com/korusifta)	홍보협력과 044-203-4131~3

## 2. 관세청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원스톱 지원센터	● FTA 원스톱 지원센터의 기업담당관이 FTA 활용애로 진단을 통하여 맞춤형 해결책 제시	YesFTA 관세포털 (fta.customs.go.kr)
FTA 컨설팅	● 중소기업이 실제 FTA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①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②인증수출자 인증, ③검증 사전 진단, ④사후관리(1개월) 등을 패키지식으로 지원(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서울본부세관 02-510-1568 부산경남지역본부세관 051-620-6637 인천경기지역본부세관 032-452-3163 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 053-230-5251 광주전라지역본부세관 062-975-8051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FTA무역 리포트」 제공	● 중소기업 CEO 맞춤형 FTA 정보 제공(분기 1회)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제도	●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부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의 정확성을 세관장이 직접 사전 확인해 주는 제도	각 본부세관 FTA 담당부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제도	● 수출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품목분류 조기심사 요청제도	● 민원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조기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15일로 단축하여 심사하는 제도	관세평가분류원 042-714-7535
FTA 활용 재직자 교육	● FTA 활용사례 관세행정 실무 교육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5
무역사절단 FTA교육·컨설팅	● 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5
인증수출자 갱신 간소화	● 기업이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면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인증을 갱신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 관세고객 상담센터 1577-8577
해외 통관애로 해소	● 재외공관에 설치된 「FTA 현장 해결팀」을 통해 통관 애로 해소를 현지에서 즉시 지원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82

### 3. 중소기업청

사업명	내용	문의
FTA·수출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컨설팅 : FTA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등(관세사 등 전문가 6일 방문)</li> <li>수출컨설팅 : 무역실무, 바이어발굴, 시장조사 등(수출 전문가 3일 방문)</li> </ul>	해외시장과 042-481-3959 온라인 접수 (www.exportcenter.go.kr)
FTA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O 및 실무자 대상의 FTA 활용전략 수립, 원산지 관리, 수출마케팅에 대한 교육</li> <li>수출기업 및 협력기업 합동교육, 관세사 방문, 소그룹 방문교육, 집합교육 등 실시</li> </ul>	해외시장과 042-481-3959 (www.exportcenter.go.kr)
ERP와 원산지 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ERP와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표준형 범용모듈 보급</li> </ul>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05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전년도 직수출 실적 100만달러 이하 중소기업을 수출 초보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li> <li>선발시 FTA 컨설팅 이수 기업 우대</li> </ul>	해외시장과 042-481-3980 (국번없이 1357)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li> </ul>	해외시장과 042-481-3980
수출지원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FTA 수출증대 성공사례집, FTA 활용 가이드북 제공</li> </ul>	해외시장과 042-481-3959 (www.smba.go.kr, www.exportcenter.go.kr)

### 4.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명	내용	문의
FTA·수출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컨설팅 : FTA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원산지검증 등(관세사 등 전문가 6일 방문)</li> <li>수출컨설팅 : 무역실무, 바이어발굴, 시장조사 등(수출 전문가 3일 방문)</li> </ul>	온라인 접수 (www.exportcenter.go.kr)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li> </ul>	글로벌사업처 02-769-6947
온라인 해외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컨설팅 이수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상품의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홍보 지원</li> <li>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다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및 해외 바이어 홍보 지원 등</li> </ul>	고객지원센터 1588-6234 (고비즈코리아 www.gobizkorea.or.kr)
수출금융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li> </ul>	글로벌사업처 02-769-6947

###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명	내용	문의
FTA 활용 재직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FTA 활용 업종별 맞춤형 교육 실시</li> <li>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및 성공사례 등 교육</li> </ul>	KOTRA 글로벌연수원 02-3497-1195
수출첫걸음 (Export Gate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수기업 및 전년도 직수출 실적 50만 달러 미만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문위원과 1:1 멘토링 서비스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밀착지원</li> <li>선발시 FTA 컨설팅 이수 기업 우대</li> </ul>	수출첫걸음지원팀 02-3460-7565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에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업체 선정시 FTA 컨설팅 이수 업체 우대</li> </ul>	해외전시팀 02-3460-7268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적 관리</li> </ul>	중소기업협력팀 02-3460-7487
FTA 선도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활용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발하여 FTA 교육·컨설팅 실시 후, FTA 체결국 소재 KOTRA 무역관이 1:1 맞춤형 종합수출지원</li> </ul>	FTA 사업팀 02-3460-7228
정부조달 선도 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EU 정부조달 및 UN, MDB 국제기구조달 선도기업 육성</li> </ul>	공공조달팀 02-3460-7224
한미 FTA Helpdesk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미 FTA 관련, 온라인/유선 상담 및 오프라인 방문상담 응대</li> <li>운영구역관 : LA(서부), 뉴욕(동부)</li> </ul>	통상지원실 02-3460-7149
FTA활용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 체결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상담</li> </ul>	통상지원실 02-3460-7149
FTA 등 통상정보 작성 및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1개국 122개 무역관으로부터 접수되는 FTA 관련 정보 Globalwindow에 게재</li> <li>격주로 통상정보지(웹진) 발행</li> </ul>	통상지원실 02-3460-7149

### 6.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명	내용	문의
CEO의 FTA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EO 자생모임을 통해 FTA 교육 및 정보제공 등 FTA 인식제고</li> </ul>	02-6000-4683
수출금융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li> </ul>	02-6000-4683 www.kicox.or.kr www.fta.go.kr

## 7. 국제원산지정보원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전문인력 양성	● 기업의 FTA활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 실시	031-6000-762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원산지관리 프로그램(FTA-PASS)을 무료로 보급	031-6000-722

## 8.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사업명	내용	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FTA 체결국에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업체 선정시 FTA 컨설팅 이수 업체 우대	02-574-2037

## 9. 중소기업중앙회

사업명	내용	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FTA 체결국에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업체 선정시 FTA 컨설팅 이수 업체 우대	02-2124-3185~8
FTA 활용 설명회	● 원산지 증명, 사후검증 대비 등 FTA 활용 관련 설명회 개최	02-2124-3162~3165

## 10. 한국무역협회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원산지관리 프로그램(FTA-Korea)을 무료로 보급	KTNET 02-6000-2030
수출스타트업	●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실적 100만 달러 미만 수출 초보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역 인프라 구축, 해외마케팅 및 수출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 ● 선발시 FTA 컨설팅 이수 기업 우대	정책협력실 02-6000-5448
온라인 해외마케팅	● FTA 컨설팅 이수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상품 바이어-셀러 매칭 및 온라인 홍보 지원 ● e-카탈로그 제작 지원, 온라인 상시거래알선 지원, 글로벌 유통 빅데이터 온라인소싱페어 참가 지원 등	트레이드콜센터 1566-5114 (트레이드코리아 kr.tradekorea.com)
수출지원 정보제공	● 무역상담, 관세, 계약 등 수출시 필요한 정보제공	1566-5114 (www.kita.net)

## 11.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1380	● 전국 어디에서든 FTA 활용 관련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 ● 온라인 FTA1380(www.fta1380.or.kr)에서도 업종별·협정별·애로요인별 전문 상담 가능	국번없이 1380 (해외 82-2-1380) 월~금 09:00~18:00
품목별 실무 매뉴얼	● FTA 수출이 많고, 영세기업이 밀집된 품목의 실무매뉴얼 발간 - 자동차부품(제동장치, 필터), 기계(밸브), 섬유(합성 섬유), 화학(화장품)	현장지원실 (국번없이 1380)
FTA 현장방문 컨설팅	● 국내 유명 관세법인/회계법인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을 위한 현장 컨설팅을 제공	사후검증지원실 (국번없이 1380)
공급망 중심 FTA활용 교육	● 수출업체와 협력업체 공급망을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형 원산지 관리 교육 실시	현장지원실 (국번없이 1380)
「FTA알리미」 서비스 제공	● 중소기업 CEO 대상 FTA 정보 제공	활용전략실 02-6000-4687
FTA 활용 재직자 교육	● 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FTA School), 업종별 특화교육, 원산지 시스템 교육 등	활용전략실 02-6000-4682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 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	현장지원실 (국번없이 1380)
FTA사후검증 대응 지원	● 중소기업의 FTA사후검증 대응을 지원 ● 사후검증 자가검증을 FTA Helper 및 실무자를 위한 사후검증 대응 매뉴얼 보급, 지역순회설명회 개최	사후검증지원실 (국번없이 1380) (fta1380.or.kr)

## 12.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 <부산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 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	051-990-7125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 후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 확인 등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종합 컨설팅을 지원	051-990-7126
FTA 활용 재직자 교육·설명회	● 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 교육	051-990-7084
FTA 활용 전문가 양성과정	● 기존 이론 위주의 FTA 교육을 탈피한 현장 중심, FTA 실무자 중심, 실습 중심의 과정 운영	051-990-7084
부산지역 기업 맞춤형 FTA 인재양성과정	● 대학생 대상 FTA 인재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자와 부산지역 기업과 취업 연계	051-990-7084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 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	051-990-7125
수출금융 설명회	● 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	051-990-7084 www.fta1380.or.kr www.fta.go.kr

### <대구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 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	053-222-3111~2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 후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 확인 등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종합 컨설팅을 지원	053-222-3105
FTA 활용 재직자 교육	● 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 교육	053-222-3108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 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	053-222-3111~2
수출금융 설명회	● 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	053-222-3108 www.fta1380.or.kr www.fta.go.kr

### <인천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 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	032-810-2836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 후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 확인 등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종합 컨설팅을 지원	032-810-2835
FTA 활용 재직자 교육	● 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 교육	032-810-2838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 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	032-810-2833
수출금융 설명회	● 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	032-810-2833 www.fta1380.or.kr www.fta.go.kr

### <광주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 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	062-350-5863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 후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 확인 등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종합 컨설팅을 지원	062-350-5886
FTA 활용 재직자 교육	● 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 교육	062-350-5863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 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	062-350-5863
수출금융 설명회	● 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	062-350-5863 www.fta1380.or.kr www.fta.go.kr

### <대전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 FTA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	042-480-3045 042-480-3076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 후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 확인 등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종합 컨설팅을 지원	042-480-3076
FTA 활용 재직자 교육	● 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교육	042-480-3044
FTA 활용 전문가 양성과정	● 기존 이론 위주의 FTA 교육을 탈피한 현장 중심, FTA 실무자 중심,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습 중심의 과정 운영	042-480-3044
특성화고 FTA 실무인력 양성과정	● 특성화고 대상 FTA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수요자 취업 연계	042-480-3044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 FTA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사건 교육 및 FTA컨설팅 실시	042-480-3045
수출금융 설명회	● 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	042-480-3044

### <울산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 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	052-287-3060~1
FTA 활용 재직자 교육	● 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 교육	052-287-3060~1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 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건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	052-287-3060~1
수출금융 설명회	● 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	052-287-3060~1 www.fta1380.or.kr www.fta.go.kr

### <경기(남부)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 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 - 원산지 판정, 인증수출자, 사후검증 등 실시	1688-4684(1)
FTA 설명회	● 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교육 실시(협력기업 통합교육) ● 주요 FTA 체결국 대상 해외진출 마케팅 전략 구상 및 진출시 유의사항 안내	1688-4684(1)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 후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 ●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 확인 등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종합 컨설팅을 지원	031-546-6774 1688-4684(1)
FTA 활용 재직자 교육	● 재직자 대상 종합교육(FTA아카데미), 분야별 특화교육, 원산지시스템 교육, 사후검증 교육 실시 - 무역, 수출입, FTA 관련 실무자용 교육 실시	031-259-7209 1688-4684(1)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 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건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	031-259-7204
FTA 해외 마케팅 지원	● FTA 활용 우수업체를 위한 "FTA선도기업 육성(KOTRA)"과 연계 지원	031-259-7204 031-259-7209
수출금융 설명회	● 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	031-259-7204 www.fta1380.or.kr www.fta.go.kr

### <경기(북서부)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 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 - 원산지 판정, 인증수출자, 사후검증 등 실시	1688-4684(2)
FTA 설명회	● 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교육 실시(협력기업 통합교육) ● 주요 FTA 체결국 대상 해외진출 마케팅 전략 구상 및 진출시 유의사항 안내	1688-4684(2)

FTA 활용 재직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자 대상 종합교육(FTA아카데미), 분야별 특화교육, 원산지시스템 교육, 사후검증 교육 실시</li> <li>- 무역, 수출입, FTA 관련 실무자용 교육 실시</li> </ul>	031-259-7209 1688-4684(2)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li> </ul>	031-259-7204
FTA 해외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활용 우수업체를 위한 "FTA선도기업 육성(KOTRA)"과 연계 지원</li> </ul>	031-259-7204 031-259-7209
수출금융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li> </ul>	031-259-7204 www.fta1380.or.kr www.fta.go.kr

### 〈강원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연간 20개사)</li> </ul>	033-256-3068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 후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li> <li>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 확인 등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종합 컨설팅을 지원</li> </ul>	033-256-3068
FTA 활용 재직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종합실무과정(상·하반기 각 1회)</li> <li>원산지관리사 양성과정(7월)</li> <li>FTA 설명회, 세미나 및 e-Learning 실시</li> </ul>	033-257-4071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li> </ul>	033-257-4071
수출금융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li> </ul>	033-257-4071 www.fta1380.or.kr www.fta.go.kr

### 〈충북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li> </ul>	043-229-2729,2722
FTA 활용 재직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 교육</li> </ul>	043-229-2729,2722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li> </ul>	043-229-2729,2722
수출금융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li> </ul>	043-229-2729,2722 www.fta1380.or.kr www.fta.go.kr

###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li> </ul>	041-539-4581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 후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li> <li>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 확인 등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종합 컨설팅을 지원</li> </ul>	041-539-4534
FTA 활용 재직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 교육</li> </ul>	041-539-4581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li> </ul>	041-539-4581
수출금융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li> </ul>	041-539-4581 www.fta1380.or.kr www.fta.go.kr

### 〈전북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li> </ul>	063-711-2045,2047
FTA 활용 재직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 교육</li> </ul>	063-711-2045,2047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li> </ul>	063-711-2045,2047
수출금융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li> </ul>	063-711-2045,2047 www.fta1380.or.kr www.fta.go.kr

### 〈전남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li> </ul>	061-288-3831
FTA 활용 재직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 교육</li> </ul>	061-288-3831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li> </ul>	061-288-3831
수출금융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li> </ul>	061-288-3831 www.fta1380.or.kr www.fta.go.kr

### 〈경북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li> </ul>	054-454-6601 (구내134)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 후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li> <li>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 확인 등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종합 컨설팅을 지원</li> </ul>	054-454-6601 (구내134)
FTA 활용 재직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 교육</li> </ul>	054-454-6601 (구내134)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li> </ul>	054-454-6601 (구내134)
수출금융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li> </ul>	054-454-6601 (구내134) www.fta1380.or.kr www.fta.go.kr

### 〈경남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li> </ul>	055-210-3043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확인 후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li> <li>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 확인 등 협력기업에 대한 원산지 관리 종합 컨설팅을 지원</li> </ul>	055-210-3043
FTA 활용 재직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 교육</li> </ul>	055-210-3043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li> </ul>	055-210-3043
수출금융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li> </ul>	055-210-3043 www.fta1380.or.kr www.fta.go.kr

### 〈제주 FTA활용지원센터〉

사업명	내용	문의
FTA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FTA 활용 관련 현장 컨설팅 제공</li> </ul>	064-759-2577
FTA 활용 재직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직자 대상 원산지교육, 지방특화산업 연계 교육</li> </ul>	064-759-2577
무역사절단 FTA 교육·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체결국으로 가는 무역사절단을 대상으로 FTA 사전 교육 및 FTA 컨설팅 실시</li> </ul>	064-759-2577
수출금융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활용 교육 및 설명회시 수출금융 설명회 병행</li> </ul>	064-759-2577 www.fta1380.or.kr www.fta.go.kr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북

# FTA 활용지원, 더 편리하고 더 든든하게!

---

**발행처**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지원문의 ☎1380 / fta1380.or.kr

**발행일** 2014. 05. 30

**발행인** 윤상직

**디자인** 아미고디자인(02-517-5043)  
www.amigodesign.co.kr

---

©이 책의 저작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습니다.  
본서 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